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 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정책보험국장 최윤배(6530)/ 보험팀장 김기성(6571)/ 담당 김윤아(6581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5-1161호

시행일자 2015. 12. 30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암환자에게 처방.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(제2015-314호) 안내**

1. 관련 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-314호(2015.12.29.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 개정 사항 -

○ 다발골수종에 'bortezomib + liposomal doxorubicin' 병용요법 신설
○ 자궁경부암에 'bevacizumab + paclitaxel + cisplatin'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'지속성' 정의문구 수정
○ 연조직육종(GIST)에 'imatinib' 단독요법(수술후보조요법) 투여대상 변경
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정보-약제정보-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'란에도 게재됨

붙 임 : 1. 주요공고개정내역
2. 공고전문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